

•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
------	----

제출년월일 : 1996.11.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96.7.1 내통령령 제15,100호)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제3336호 '96. 10.5 개정공포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글자

- 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함(안 제6조 제3항 제1호)
- 나.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미만에서 5,000원미만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 다.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라. 과태료수입을 시수입 또는 구수입으로 하던것을 구수입으로 조정함.
- 마.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1)
 - (1)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구경)에 따라 세분화함(안 별표1 제2호)

(단위 : 원)

현 행	개 정	안
• 직경 1m 초과 : 17,500	• 직경 1m초과 2m이하 : 13,100	
	• 직경 2m초과 3m이하 : 21,850	
	• 직경 3m초과 : 30,600	

(2)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어스양카의 접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함(안 별표 1 제1호, 제8호)

* 정율제는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접용료의
과다 부과라는 논란이 있어 정액제로 변경

(3) 결정된 접용료에서 100원미만 단위는 정수하지 아니함(안 별표 1 비교제5호)

(4)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
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함(안 별표 1 비교제6호)

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접용료의 산정기준은 1996년분부
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호)

사. 도로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과태료의 기준을 일부변경 신설함(안 별표
3) 도로집용허가후 초과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가 50만
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사용 면적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표를 변경하고 ①도로의
굴착공사후 주요지하매설물의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자 ②굴착공사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지하매설
물의 관리자 ③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
에게 부과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기준표를 신설함.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를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중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가 징수한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3』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40조, 제43조, 제77조의 2, 제80조의 2, 제86조의 2,
도로법 시행령 제26의 2,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 제3336호 ('96. 10.5)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 : 필요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 공중 전화 · 송전 탑기타이와 유사한것	전 주	1개	1,350
	전주와 유사한 것		2,000
	공 중 전 회		54,200
	송전탑 · 변압기 · 저장고 · 기타	점용면적1m ²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급액
2. 수도관 · 하수도관 · 전기판 · 전 기통신관 · 가스관 · 송 유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수도관 · 하 수도관 · 전 기판 · 전기 통신관 · 가 스관 · 송유 관 · 송열관 · 작업구(맨 홀) · 전력구 · 통신구	직경 0.1m이하 직경 0.1m초과 0.2m이하 직경 0.2m초과 0.4m이하 직경 0.4m초과 0.6m이하 직경 0.6m초과 0.8m이하 직경 0.8m초과 1.0m이하 직경 1.0m초과 2.0m이하 직경 2.0m초과 3.0m이하 직경 3.0m초과	850 1,750 3,500 5,250 7,000 8,750 13,100 21,850 30,600 1,300 2,600 5,200 7,850

(금액단위 : 원)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용단위	기 간 단 위 기간단위	점 용 료
지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지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지경 1.0m초과 2.0m이하	길이 1m	1년	19,650
지경 2.0m초과 3.0m이하			32,750
지경 3.0m초과			45,850
3. 광고탑 · 광고판 · 간 판(돌출간 판을 포함 한다) · 사 설안내표지 · 현수막 · 아취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광고탑 · 광 고판 · 간판 도출간판을 포함한다) 기 타	일시설치한 것 (1월미만 점용) 표시면적 1m ²	1일 1년 73,650
	시 설 안내 표지	1개	300 88,400
	현 수 막	표시면적 1m ²	1일 176,800
	아 취	도로횡단 기 타	표시면적 1m ² 88,400
4. 주유소 · 주차장 · 여 객자동차터 미널 · 화물 터미널 · 자 동차수리소 · 승강대 · 화물적치장 · 휴게소 · 기타 이와 유사한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4층이상인건축물 전 입로 기 타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6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6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5. 철도 ·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4 를 곱한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6. 지하상가 · 지하실 · 통로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3층이상인건축물 공중또는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육교상가·기타			토지가격에 0.01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7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9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07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판매 기·상품진열대기 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 수선대·가로휀매대 노점·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8. 공사용판자벽· 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 료, 굴착부분기타	일시점용한 것 기 타	점용면적 1m ²	1일 1년	300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 원·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2 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 호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기 타	점용면적 1m ²	1년	토지가격에 0.005 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5 를 곱한금액	

* 비 고

-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길이·표시면적등이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미만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 또는 1미터로 산정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광고판·간판등의 표시부분의 합계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 미만은 징수한다. (1,950원 → 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전별로 전체관을 외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제3호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접용물중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의 접용물
-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접용물
-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접용물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 이외의 접용물
-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접용물중 “일시설치한 것” 이외의 접용물
-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접용물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이외의 접용물
10. 위 표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접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접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접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1.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접용물중 버스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는 접용료 산정총액이 연간 7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700,000원으로 한다.
12.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접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 (제9조 관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	초과면적 1㎡ 마다 10,000원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2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가 굴착공사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점용허가를 받은자와 관리청에 즉시 통보를 아니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되어 통보된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의 굴착공사에 대한 지도·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소홀히 할 때	법 제86조의2 제1항 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빌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2호	점용면적 1㎡ 마다 10,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3호	미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7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4호	미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 1,5호는 면적이 1㎡를 초과할 때마다, 6,7호는 경과기간이 1일을 초과할 때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③ (생략) ④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등 ----- -----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교통부 표준 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 2. ~ 3. (생략)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건설표준품셈 ----- ----- -----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신 설>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1) ----- ----- 5,000원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세입구분)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 보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p> <p>1. ~ 2. (생략) 2. (생략) ② <신 설></p>	<p>제11조(세입구분) -----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 ----- ----- 1. ~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구가 징수한 과태료는 구수입으 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정안					
1.		1.					
접 용 물 의 종 류		접 용 물 의 종 류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고·공동구·전력구·통신구·작업구(맨홀) ·기타	전주·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변압기·저장고·기타				
2.		2.					
접 용 물 의 종 류		접 용 물 의 종 류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 신관·가 스관·송 유관·기 타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 신관·가 스관·송 유관 타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 신관·가 스관·송 유관·기 타 유사한 것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 신관·가 스관·송 유관·기 타 유사한 것	접 용료	접 용료	접 용료	접 용료
직경 0.1m이하	850	직경 0.1m이하	850				
직경 0.1m이하 0.2m이하	1,750	직경 0.1m초과 0.2m이하	1,750				
직경 0.2m이하 0.4m이하	3,500	직경 0.2m초과 0.4m이하	3,500				
직경 0.4m이하 0.6m이하	5,250	직경 0.4m초과 0.6m이하	5,250				
직경 0.6m이하 0.8m이하	7,000	직경 0.6m초과 0.8m이하	7,000				
직경 0.8m이하 1.0m이하	8,7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8,750				
직경 1.0m초과	17,5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3,100				
		직경 2.0m초과 3.0m이하	21,850				
		직경 3.0m초과	30,600				
기타의관	직경 0.1m이하 직경 0.1m초과 0.2m이하	아스양카, 기타의관	직경 0.1m이하 직경 0.1m초과 0.2m이하	1,300	직경 0.1m이하 직경 0.1m초과 0.2m이하	1,300	2,600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현 행	개 정																												
2.	2.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용물의 종류</th><th>점용료</th></tr> </thead> <tbody> <tr> <td>직경 0.2m초과 0.4m이하</td><td>5,200</td></tr> <tr> <td>직경 0.4m초과 0.6m이하</td><td>7,850</td></tr> <tr> <td>직경 0.6m초과 0.8m이하</td><td>10,450</td></tr> <tr> <td>직경 0.8m초과 1.0m이하</td><td>13,100</td></tr> <tr> <td>직경 1.0m초과</td><td>26,200</td></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6,200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용물의 종류</th><th>점용료</th></tr> </thead> <tbody> <tr> <td>직경 0.2m초과 0.4m이하</td><td>5,200</td></tr> <tr> <td>직경 0.4m초과 0.6m이하</td><td>7,850</td></tr> <tr> <td>직경 0.6m초과 0.8m이하</td><td>10,450</td></tr> <tr> <td>직경 0.8m초과 1.0m이하</td><td>13,100</td></tr> <tr> <td>직경 1.0m초과 2.0m이하</td><td>19,650</td></tr> <tr> <td>직경 1.0m초과 2.0m이하</td><td>32,750</td></tr> <tr> <td>직경 3.0m초과</td><td>45,850</td></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9,6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2,750	직경 3.0m초과	45,850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6,200																												
점용물의 종류	점용료																												
직경 0.2m초과 0.4m이하	5,200																												
직경 0.4m초과 0.6m이하	7,850																												
직경 0.6m초과 0.8m이하	10,450																												
직경 0.8m초과 1.0m이하	13,100																												
직경 1.0m초과 2.0m이하	19,650																												
직경 1.0m초과 2.0m이하	32,750																												
직경 3.0m초과	45,850																												
8.	8.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용물의 종류</th><th>일시점용 한 것</th></tr> </thead> <tbody> <tr> <td>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td><td>기타</td></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일시점용 한 것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용물의 종류</th><th>일시점용 한 것</th></tr> </thead> <tbody> <tr> <td>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td><td>기타</td></tr> </tbody> </table>	점용물의 종류	일시점용 한 것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	기타																				
점용물의 종류	일시점용 한 것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어스양카·기타	기타																												
점용물의 종류	일시점용 한 것																												
공사용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기타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 비교

현 행	개정안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필지가격의 산출평균가격으로 한다.	1.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5. 단위당 접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산정총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부과한다.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의 예 : 1,455원→1,400원, 1,955원→1,950원)	5. -----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1,900원)
6. 위 표의 1호에는 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송유·송열·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중 관시설이 아닌 접용물을 포함한다.	6. 위 표 제2호의 접용물중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의 직경은 외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별지 3]

과태료 부과기준대비표(제9조 관련)

< 현 행 >

가. 도로점용허가후 초과사용면적	과태료금액
10m' 이하	50,000원
10m'초과 20m'이하	150,000원
20m'초과 40m'이하	200,000원
40m'초과 60m'이하	250,000원
60m'초과 80m'이하	300,000원
80m'초과 100m'이하	400,000원
100m' 초과	500,000원

나. 일시적치물을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금액
10m' 이하	50,000원
10m'초과 20m'이하	150,000원
20m'초과 40m'이하	200,000원
40m'초과 60m'이하	250,000원
60m'초과 80m'이하	300,000원
80m'초과 100m'이하	400,000원
100m' 초과	500,000원

다. 도로점용공사후 확인받지 않은기간	과태료금액
1월 이하	50,000원
1월초과 3월이하	200,000원
3월초과 6월이하	300,000원
6월초과 1년이하	400,000원
1년초과	500,000원

다. 도로원상회복검사 를 받지 않은기간	과태료금액
1월 이하	50,000원
1월초과 3월이하	200,000원
3월초과 6월이하	300,000원
6월초과 1년이하	400,000원
1년초과	500,000원

[별표 3]

<개정안>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하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1호	초과면적 1㎡ 마다 10,000원	3,000,000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한 후 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2호	3,000,000원	3,000,000원
3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가 굴착공사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점용허가를 받은자와 관리청에 즉시 통보를 아니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되어 통보된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의 굴착공사에 대한 지도·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소홀히 할 때	법 제86조의2 제1항 제3호	3,000,000원	3,000,000원
4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법 제86조의2 제1항 제4호	3,000,000원	3,000,000원
5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2호	점용면적 1㎡ 마다 10,000원	500,000원
6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후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3호	미확인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7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위상회복하고 위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의2 제2항 제4호	미검사기간 1일마다 5,000원	500,000원

* 1.5호는 면적이 1㎡를 초과할 때마다, 6.7호는 경과기간이 1일을 초과할 때마다